

중부대학교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안)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와 중부대학교(대학원)에서 개설된 사회복지현장실습 전공교과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①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조항에 따라 학생이 향후 관련 실습기관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기관, 지역사회,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
 2. 기관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지침), 자원 네트워킹에 대한 이해
 3. 기관의 사회복지실천(또는 정책 및 행정 분야)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
 4. 기관의 행정 및 기록에 관한 교육
 5. 사회복지사로서의 윤리적 실천 및 가치, 안전지침에 대한 교육
 6. 실습내용에 대한 피드백 및 정기적인 슈퍼비전 제공, 실습 중간평가 진행 및 평가내용의 반영, 종결평가 진행 및 실습평가서 작성
- ②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현장에서 실시하는 기관실습과 학교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실습세미나로 구성된다.
- ③ 학과는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운영을 위한 행정총괄 및 실시기관과의 연락을 지원하고, 교과목 담당교수는 기관실습 지도자와 협력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과 실시기관별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계획서에 따라 실습이 운영되도록 교과목을 총괄 운영하고 최종 평가한다.

제3조(실습세미나)

① 실습세미나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한다(단, 감염병 등으로 인해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어려울 경우 온라인 세미나도 가능).
- 2)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한다.
- 3)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20명 이내여야 하며, 20명 이상일 때 분반한다.

제4조(현장실습 운영 기준 등)

① 실습생은 기관실습 개시일 이전에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사전교육 시간은 기관실습 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실습기간 중 실습생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기관 실습 중 실습생의 문제로 현장실습을 이어갈 수 없을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담당, 실습기관 기관장의 허락을 득하여 실습을 중도에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습생의 기 이수한 실습시간에 대해서는 감면되지 않으며, 중도 포기에 따라 사회복지사 현장실습의 학점은 부여되지 않는다.

③ 실습생 개인의 질병, 사고, 사회복지기관 폐쇄, 폐업, 감염병 등으로 사회복지 기관실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학과는 실습생의 원활한 실습 교과목 이수를 위해 유사한 기관으로 이전 조치한다. 다만 이전할 기관을 찾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습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습생에게 기 이수한 실습시간에 대해서는 차후 기관 실습시간 160시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단, 수강 중인 사회복지현장실습 학점은 부여되지 않는다.

제5조(기관실습 운영 기준 등)

① 기관실습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2020년 이전 입학자의 경우 120시간 이상으로 함).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에서 진행한다.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이다.

② 기관실습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전(直前) 학기 방학 중 또는 개설된 학기 중에 160시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학기는 전년도 12월초~당해 연도 6월말까지, 2학기는 6월초~12월말까지 실시한다.

③ 기관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며, 하루에 이수가능한 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한다.

제6조(기관실습비)

① 학생들은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실습기관에 실습비를 납부한다.

제7조(사회복지현장실습 학점 인정 및 인정 절차)

① 사회복지현장실습은 3학점으로 한다.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담당교수는 기관실습 지도자가 송부한 실습평가서 내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성적을 부여한다.

제8조(지원 및 선발)

① 사회복지실습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학과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자격에 합당한 자

1. 사회복지현장실습과정 실시 전에 4개 학기 차 이상을 이수하거나 이수 예정인 자(단 편입생과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2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거나 이수 예정인 자)

2) 실습기관에서 요구하는 신청자격에 합당한 자

②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실습생 프로파일 및 실습 신청서를 실습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학과장이 최종 승인한다.

제9조(등록 및 수강신청)

①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대상자는 해당 학기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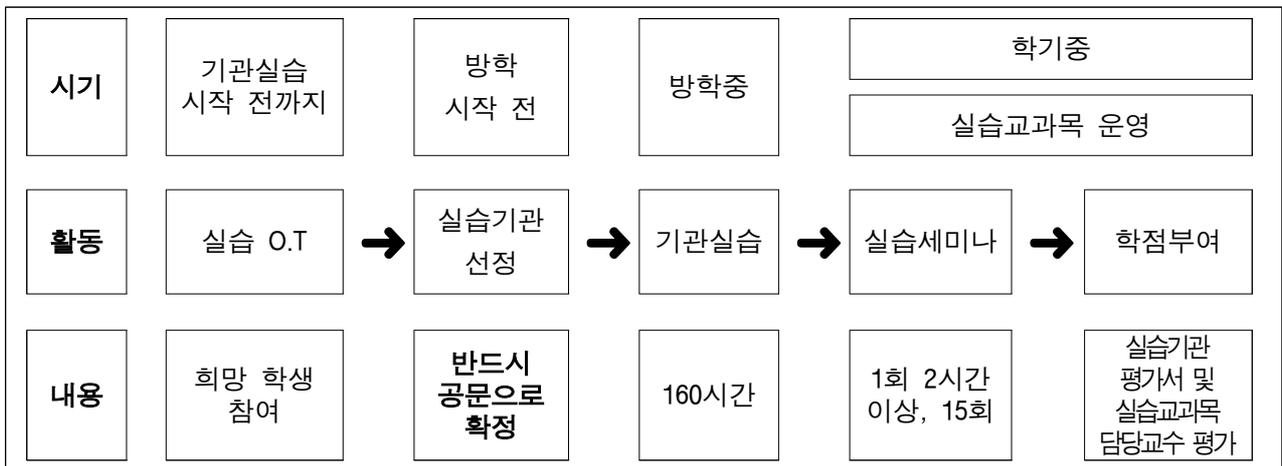
제10조(교원 강의시간 인정)

①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의 강의시간은 3시간으로 인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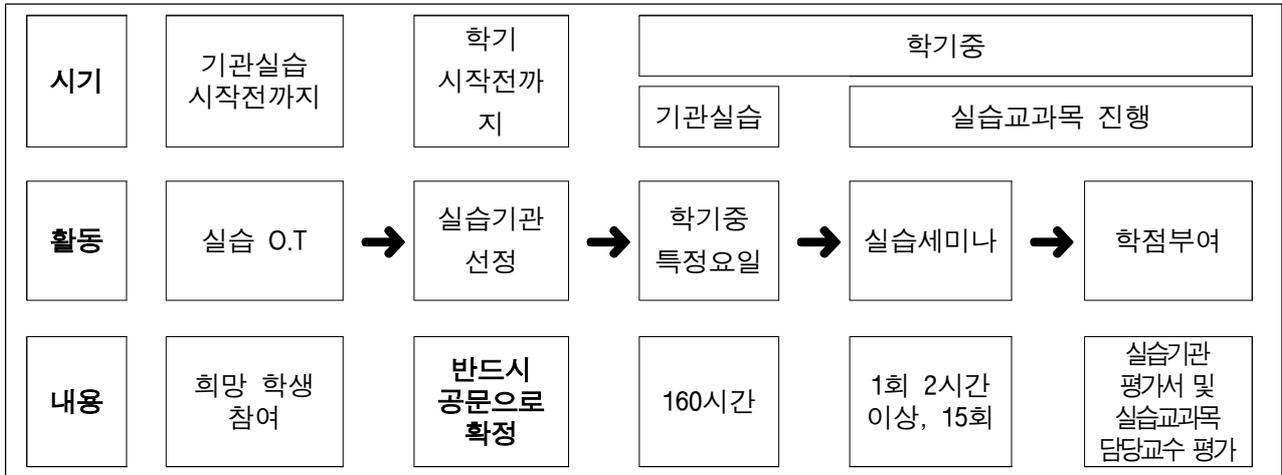
제11조(실습진행절차)

구체적인 실습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방학 중 실습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② 학기중 실습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12조(학기 외 기관실습)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과목 운영 규정상 수강 학기 안에 기관실습과 실습세미나 이수를 완료하여야 하나 방학 등 학기 외 기간에 기관실습을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1) 교과목 개설학기 직전 방학에 실습 후 실습교과목 이수(실습교과목 이수 후 기관실습은 불인정)
- 2) 군복무, 교환학생, 질병·경제적 사유에 의한 장기간 휴학 등 학생 개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관실습 후 실습교과목 이수가 바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전공주임(학과장)의 승인 하에 실습교과목 이수 후 인정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운영과 관련하여 본 세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학전공(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표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개정 2019.8.12.>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전문대학	대학원
필수 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	--

※ 비고: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가. 기관실습

-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나. 실습세미나

- 1)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2)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 3)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 다.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